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7호서식] <개정 2025. 10. 1.>

[년도]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

① 사업자명		② 대표자 성명	
③ 사업자등록번호		④ 전화번호	
⑤ 소재지			
⑥ 업종 [ ]종이제조업 [ ]유리용기제조업 [ ]제철 및 제강업			

⑦ 순환자원 사용 내역

순환자원 구 분	순환자원 종 류	구입량 (톤/연)	공급자	사용량 (톤/연)	재고량 (톤/연)
[ ] 인정 [ ] 지정·고시					
계					

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자 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작 성 요 령

1. ①란부터 ⑥란은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현황과 업종을 적습니다
2. ⑦란의 순환자원 사용 내역은 사용한 순환자원별로 각각 작성하셔야 합니다.
3. ⑦란의 순환자원 구분란은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순환자원 또는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순환자원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표기합니다.
4. ⑦란의 구입량은 순환자원의 사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의 반입된 양을 기준으로 적습니다.
3. ⑦란의 사용량은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투입(사용)한 양을 기준으로 적습니다.
4. ⑦란의 양은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되,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80g/㎡ 또는 중질지80g/㎡]